

#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관련 Q & A

## 1.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원칙

**Q1. 아동 수요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하는지?**

- 아동 이용수요와 관계없이 19:30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.
- 아동 수요가 있는 경우 당연히 운영하여야 하며, 보육교사 수급 문제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시 구·군에 사유 명시하여 공문으로 제출

**Q2. 아침(07:30~09:00)과 저녁(18:00~19:00)을 모두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?**

- 아침(07:30~09:00)은 어린이집 아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, 저녁(18:00~19:30)이 의무운영 시간임
- 따라서 아침시간의 경우 요일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음  
예시) 월, 수요일 - 08:00부터, 화, 목, 금요일 - 08:30부터

**Q3. 종일반 보조교사 및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초과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?**

- 주간 담임교사가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임.
- 보조교사 및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보육업무를 전담할 수 없으며,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임.

**Q4. 어린이집 원장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?  
초과근무수당이 지원되는지?**

- 주간 담임교사가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임.
- 단,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초과근무 가능하며, 수당 지원됨
- 종일반 이용아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, 저녁(18:00~19:30)에 원장(교사 겸직 원장 제외)이 근무하는 것은 가능(초과근무수당 지원불가)

**Q5. 시간연장교사가 근무하는 경우에 초과근무수당 지원이 가능한지?**

- 시간연장교사는 시간연장반(19:30 이후)의 보육을 위한 교사임
- 시간연장교사가 16:00에 출근하여 18:00 이후 종일반 아동을 보육한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며, 주간 담임교사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인정

**Q6. 18:00 이후 종일반 이용대상 아동은?**
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이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
- 18:00 이후 어린이집 이용 희망 아동 중
  - 영아(0~2세)는 종일반 지원 자격 아동
  - 유아(3~5세)는 0~2세 종일반 자격기준에 준하되,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

**Q7. 종일반 이용 영아 1명, 유아 2명의 경우 교사 2명이 근무를 해야하는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?**

- 종일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 기준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
-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 한하여 영아(0~2세)와 유아(3~5세)의 혼합반 편성이 가능하며, 최저 연령 아동 기준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

**Q8. 전담교사 지원 및 초과근무수당 지원 기준은?**

- 예산 책정 시 민간은 전담교사, 국공립·가정 등은 초과근무수당 지원 기준으로 산정
- '19. 2월 수요조사 실시 후 전담교사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원 어린이집 결정 예정으로 최대한 전담교사 지원 계획

**Q9. '보조교사'를 지원받고 있으면 지원이 안되는지?**

- 보조교사 지원은 보건복지부 주관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지원과 별개의 사업임.
- 따라서 보조교사 지원을 받고 있어도 전담교사 지원 가능함.

## 2.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방법

Q1. 종일반 당직교사는 현재 근무중인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지? 담임교사 중에서 전담근무를 요청하는 교사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종일반 당직근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하여 결정
- 연장근로 사전 합의 등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률 준수

Q2. 교사 3명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교사 1인당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해도 되는지?

- 종일반 당직근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하여 결정
- 초과근무수당은 1일 3시간을 한도로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지원

Q3. 아침에 이용아동이 없어도 07:30부터 운영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원되는지?

- 아침(07:30~09:00)은 어린이집 아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
- 저녁(18:00~19:30)시간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아침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 지원하되, 1일 3시간을 한도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지원
- 아침시간은 탄력운영이 원칙인 만큼 수요가 없음에도 보육교사의 아침 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지양
- '19. 3월까지 아침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원되며, '19. 4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미지원

**Q4. 아침시간은 미운영, 저녁에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?**

- 아침(07:30~09:00)은 어린이집 아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
- 이용아동이 없는 경우 교사 2명이 초과근무할 필요는 없으며, 교사 1명의 초과근무만 인정
- 저녁시간 이용아동이 많아 교사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원가능하며, 1일 3시간을 한도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지원

**Q5. 18시 이후 2개반이 남아 교사 2명이 근무하였고, 1개반 아동이 19:00에 모두 하원한 경우, 해당반 교사는 퇴근해도 되는지? 근무시간 기재는?**

- 저녁 19:30까지 교사 2명이 남아있을 필요 없음(교사 별 이용아동이 있는 경우는 근무해야 함)
- 아동이 모두 19:00에 하원한 경우 해당 반 교사는 퇴근하면 되고, 다른 반 교사가 19:30까지 근무하면 되며, 초과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재

**Q6. 근무시간이 08:00~17:00인 교사가 19:30까지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인정시간은?**

- 해당 교사는 17시 이후 시간이 초과근무 시간임. 따라서 17:00~19:30까지 2시간 30분 초과근무 인정됨.
- 근무시간이 09:30~18:30인 경우, 18:30 이후가 초과근무 시간이므로 1시간 초과근무 인정

## 초과근무시간 계산

- 아침(07:30~09:00)에 교사 A(근무시간 08:30~17:30)가 근무하고 저녁(18:00~19:30)에 교사 B(근무시간 09:30~18:30)가 근무한 경우,
  - ▷ **초과근무시간은 총 2시간**
  - 아침 1시간(07:30~08:30), 저녁 1시간(18:30~19:30)
- 아침(08:00~09:00)에 교사 A(근무시간 09:00~18:00)가 근무하고 저녁(18:00~19:30)에 교사 B(근무시간 09:00~18:00)가 근무한 경우,
  - ▷ **초과근무시간은 총 2시간 30분**
  - 아침 1시간(08:00~09:00), 저녁 1시간 30분(18:30~19:30)
- 교사 A(근무시간 07:50~16:50)가 아침(07:30~09:00), 저녁(18:00~19:30)에 모두 근무한 경우,
  - ▷ **초과근무시간은 총 3시간**
  - 아침 20분(07:30~07:50), 저녁 2시간 40분(16:50~19:30)

**Q7. 종일반 운영하다가 구청에 공문 제출 후 미운영하는 경우, 미운영하다가 종일반 운영하는 경우 수당지원은?**

- 초과근무수당은 1일 3시간을 한도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원
- 종일반 운영하다가 구청에 공문 제출 후 미운영하는 경우 운영한 날 까지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 지원
- 미운영하다가 종일반 운영하게 된 경우 운영한 날부터 초과근무 인정, 수당 지원. 단, 종일반 운영 사실을 구·군에 공문으로 제출

**Q8. '19. 1~3월은 초과근무수당 지원이나, 전담교사를 사전에 채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원받고 초과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부담이 가능한지?**

- '19. 1~3월은 초과근무수당 지원, '19. 4월부터 전담교사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원 예정('19. 2월 수요조사 실시 후 결정 예정)
-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하여 종일반 운영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원 가능(단, 시에서 지원하는 전담교사는 1일 4시간 기준임을 감안하여 교사채용)

**Q9. 종일반 운영 중 당직교사 또는 겸직원장의 갑작스런 개인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일 종일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지?**

- 어린이집은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.
- 단,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구·군에 해당일 미운영 사유 기재하여 공문으로 보고, 사전보고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발생 2일 이내 보고
- 미운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원

### 3.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내용 및 방법

#### Q1. 초과근무시간 계산 방식은?

- 초과근무수당은 1일 3시간을 한도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원
- 교사 개인별 1개월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

예시) 교사 초과근무시간 계산 방법

일자	교사A	교사B
'19.01.07	1:30	-
'19.01.08	0:50	0:40
'19.01.09	1:00	0:30
'19.01.10	-	1:30
'19.01.11	1:00	0:30
계	3:20	2:40

⇒ 초과근무수당 지원 : 교사A 3시간, 교사B 2시간

#### Q2. 종일반 근무 교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호봉에 따라 계산 후 지급해야 하는지?

-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.

#### Q3. '19. 1~3월 종일반 전담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육통합 시스템 임면보고는?



- 종일반 전담교사는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 
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전담교사 채용 시 '보조교사'로 시스템에 등록  
하고 구·군에 임면보고 공문 제출 시 '종일반 전담교사' 명시
- '19. 2월 전담교사 지원 계획 수립 후 시스템 반영 계획

#### Q4. 초과근무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은?

- 시간외 근무대장, 초과근무수당 신청서식 첨부하여 구·군에 공문으로 신청
- 구·군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보조금 계좌에 입금
- 어린이집 보조금 계좌에서 교사 개인별 계좌로 초과근무수당 입금
- '19. 2월 이후 보육통합시스템 반영 계획

#### Q5. 이용아동 대장 등 서류 작성방법은?

- '18시 이후 종일반 이용아동 대장'은 18시 이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 
현황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담당교사 배치 등 기초자료로 활용
- 종일반 이용대장은 해당일자 근무 교사 및 이용아동을 기재하는 것  
으로 종일반 운영현황을 매일 작성
- 시간외 근무대장은 초과근무일자, 아침·저녁 등 초과근무시간, 초과  
근무자 등을 기재

#### Q6.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되는지?

- 초과근무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기준 및 퇴직금적립대상에 해당함.